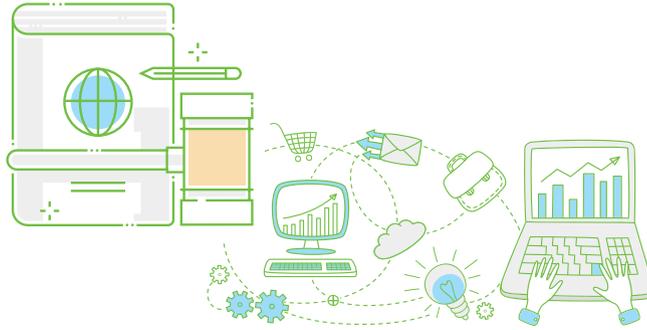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상 현황 및 문제점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상계획부장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 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의 고도화 및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종들이 늘어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나 출퇴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고용·취업 형태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종래의 근로자 개념의 잣대로는 새로운 고용·취업 형태를 보호할 수가 없다. 이에 「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특성을 모두 지닌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적용을 확대해 왔다.

##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2022년 7월 기준 약 90만 명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은 2000년대 초중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2008년 7월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시 처음 반영된 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일정한 요건(전속성<sup>1)</sup>)을 갖추고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sup>2)</sup>이 이에 해당된다.

2008년 7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서 2022년 7월 유통 배송기사 등 16개 직종까지 확대되었으며(〈표1〉 참조), 보호 종사자 수도 2008년 37만 명에서 2021년 77만 명까지 확대되었고, 2022년 7월 화물차주가 추가 적용되어 전체 보호 대상은 약 90만 명에 이른다.

〈표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시행	전체
'08.7.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골프장 캐디
'12.5.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16.7.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기사
'19.1.	건설기계조종사 전체
'20.7.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1.7.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2.7.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자동차, 곡물·곡물가루·사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1)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널리 보기

: 산재보상 이슈 및 대응 ②



###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상 재해·보상기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2년 7월 기준 16개 직종이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들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보험급여 지급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 시 보험급여의 기초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사용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종별로 고시하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들의 경우 2022년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적용 평균임금이 53,313원으로 고시되어 있어 이 금액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를 산정하게 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산재 처리된 현황을 보면, 총 12,182건 중 11,180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승인율 91.8%를 보인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산재 인정 586건에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에는 5,667건으로 2017년 대비 8.7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의 확대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 산재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인정 5,667건 중 퀵서비스 기사가 3,963건(69.9%)로 가장 많다. 이는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다음으로 택배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2년 7월 기준 16개 직종이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들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온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보험급여 지급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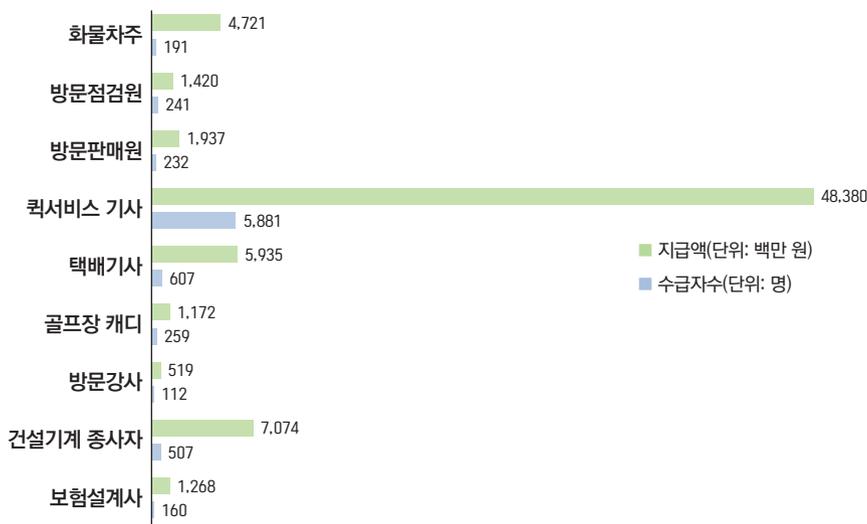


417건(7.4%), 골프장 캐디 264건(4.7%), 건설기계 조종사 217건(3.8%), 방문판매원 204건(3.6%) 순이다.

또한, 최근 5년간(2017~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자 수는 16,567명이고 보험급여 1,559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보험급여 82억 원에서 2021년에는 73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7.9배 증가하였다.

직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2021년도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730억 원 중 퀵서비스 기사가 484억 원(66.3%)로 가장 많고, 건설기계 조종사 71억 원(9.7%), 택배기사 59억 원(8.1%), 화물차주 47억 원(6.4%), 방문판매 19억 원(2.6%) 순이다.

〈'21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상 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기준’ 폐지(2023. 7. 1.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인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 만이다.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상당 부분이 일명 ‘공유콜’을 통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존 산재보험법 적용의 전제 조건인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부터 노·사·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포럼을 통해 전속성 기준

## 널리 보기

: 산재보상 이슈 및 대응 ②

등을 폐지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2022. 5. 29. 의결,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재(再)정의되었다. 따라서 향후 법률에서 정한 노무 제공자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속성과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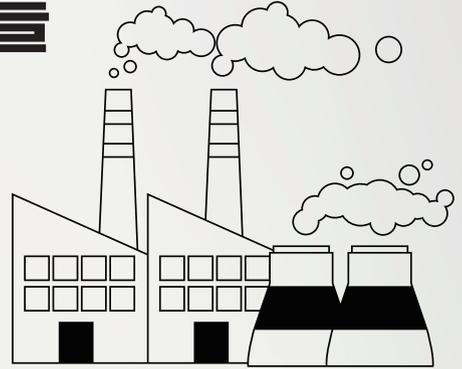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 제공자)는 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과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장기적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의 열거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산재보험법」 적용 직종은 구체적인 정의 영역 내의 사람들로 한정된다. 그래서 종사실태가 유사함에도 직종 정의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고, 제도 마련 시점의 특정 직종의 종사 실태를 반영한 정의로는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무 제공 변화를 반영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용 대상 직종을 현재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특례를 통한 보호가 아닌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 방식으로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와 구분하여 특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방식의 경우 종사 실태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제도 운용의 복잡성, 보호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국민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체계 내에서 적용 방식이나 보상기준을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 모두가 건강한 일터를 소망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안전보건컨설팅 체계적 대응



협회의 전문가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설팅,  
고객 니즈(Needs)에 신속히 대응하여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 보건안전종합 컨설팅
- ♣ 위험성평가 컨설팅
- ♣ 화학물질 중독예방 컨설팅
- ♣ MSDS작성 및 비공개 승인 컨설팅
- ♣ 국소배기장치시스템 컨설팅

